



제조물 책임법과 소비자의 대응

PL and Customer

황선옥 /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1. 들어가는 말

현대는 대량생산과 함께 대량소비사회가 되면서 소비자는 수많은 모든 상품의 제조공정이나 성분, 성능 등에 대해 알 수 없는 부분이 더욱 많아졌다.

제조업자는 상품에 대한 안전성이나 소비자의 필요성보다는 이윤의 극대화와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하며 제조, 판매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우리 소비자는 화재발생, 불량식품, 자동차 급발진 등의 많은 사고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 위해를 당하거나 생명까지 잃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생겨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여도 소비자는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 제조물로부터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제조물 책임법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

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입법 검토하고 관심 있는 소비자 단체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입법 방향을 제안했고 정부는 국회를 거쳐 1999년 7월 입법 예고 후 2년 6개월의 위예 기간을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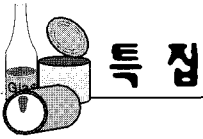
기업 즉, 제조업자들은 제조물 책임법에 대하여 이미 대처방안과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 소비자들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 배상을 받고 기업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제조물 책임법을 알고 연구하여 감시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1-1.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법률 제6109호로 2000년



1월 12일 신규제정됐으며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조물 책임법은 총 제8조로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제조물 책임)
- 제4조(면책사유)
- 제5조(연대책임)
- 제6조(면책 특약의 제한)
- 제7조(소멸시효)
- 제8조(민법의 적용)

1-2.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다. 현행 민법 제750조에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소비자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과 손해의 발생 사실,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제조물 책임법 상식

1)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자동차, 가전제품의 부품등과 같은 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창호 등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 단 아파트, 빌딩, 교량 등의 부동산이나 제조, 가공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등의 1

차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는 결함

- 제조상의 결함 : 이물질 흡입이나, 조립불량, 미생물 오염
- 설계상의 결함 : 용기결함, 식품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 표시상의 결함 : 취급 설명서의 설명부족, 경고라벨 미부착, 과대광고, 표시기준 위반.

3)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원재료부품 및 완성품 제조업자
- 제조물의 수입업자
-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업자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에 의하여 공급한 자
- 단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제조물 그 자체에만 그친 경우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제조업자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조물이 유통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원재료, 부품 제조업자가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나 지시에 의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단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피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때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5) 손해배상 청구기간

-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은 청구해야 한다.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소멸한다.

-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1-4. 제조물 결함 피해 발생시 소비자의 대응

1)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결함 제조물과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을 해야 한다.

2)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청하여 사업자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 습득을 하여야 한다.

1-5. 소비자 입장에서의 법적인 보완

1) 제조물 책임법 제2조의 제조물에 대한 정의로 아파트, 빌딩, 농·수·축·임산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파트와 빌딩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나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차 농·수·축·임산물의 GMO, 잔류 농약 PCB 등의 문제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조속히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제3조 제조물 책임의 대상에서 유통, 판매업자가 제외되었다.

유통업체에서 제조자에게 자체 상표를 부착

하여 생산하도록 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유통 중 냉동, 냉장 등 보관을 잘못하여 제조물에 결함이 생긴 경우는 (판매자) 유통업체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2. 맺는 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된 제조물 책임법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로 결함 제조물로부터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

소비자는 올바른 인식과 행동으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권리를 찾는 일에 능동적 대응을 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새로 시행되는 법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ko]

독 자 결 령 모 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결령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835-9041
E-mail: kopac@chollian.net